

충청북도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413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1년 월 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제안이유

- 도로보수용건설기계운영관리에 있어서 건설기계의 투입 및 회수에 관한 규정 중
 - 건설기계의 작업장소 이동 시 사업소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규정을 신고로 완화하고
 - 사용기간 만료일전 건설기계 회수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

주요골자

- 건설기계의 작업장소 이동 시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
⇒ 신고토록 함 (제12조 제2항)
- 사용기간 만료일전 건설기계 회수규정 삭제 (제12조 제3항)
※ 계약서상으로 규제할 내용

의안전문 : 따로붙임

신구조문대비표 : 따로붙임

관계법령발췌 : 따로붙임

사전협의 또는 승인신청결과 : 해당없음

기타참고자료 : 없음

충청북도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항중 “사업소장의 승인을 얻어야”를 “사업소장에게 신고하여야”로 하고,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
<p>제2장 건설기계 사용</p> <p>제12조 (건설기계의 투입 및 회수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임차인이 작업조건 변동에 따라 사용 중인 건설기계의 작업장소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<u>사업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u></p> <p>③ <u>천재지변, 기타의 사유로 건설기계를 사용할 필요가 있어 사업소장이 반납을 요구할 때에는 임차인은 사용기간 만료 일전이라도 이에 응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2장 건설기계 사용</p> <p>제12조 (건설기계의 투입 및 회수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 - - - - - - - - - - - - <u>사업소장에게 신고하여야</u> - - -</p> <p>③ <삭제>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
관 계 범 령 발 취

<지방자치법>

제15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